

공무직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 근로자(홍보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등급	인원	업무 내용	근무지
공무직근로자 (홍보전문요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홍보 동영상 제작·촬영·편집○ 온라인 홍보 채널(유튜브 등) 운영○ 대·내외 영상 콘텐츠 제작 협업○ 촬영 기자재 및 소품 관리○ 기타 대변인실 홍보업무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 예산·조직의 변동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근무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마. 보수기준 : 월 2,247천 원(세액공제전)

* (기본급) 월 2,107천 원, 정액급식비 140천 원

** (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차휴가수당 등 별도 지급

(보험) 4대 보험 의무 가입 →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2005.09.27. 이전 출생자) 및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아래 표준 기준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 요건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채용 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근로자 (홍보전문요원)	<p>(응시자격) 국내·외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p> <p>(우대사항) 영상 제작·촬영·편집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 방송영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등 영상 제작·촬영·편집 관련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 (자격증) 영상 제작·촬영·편집 분야 자격증 소지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그래픽기술자격증(GTQ) 1급,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자격증 등- (경력) 국가·민간 기관에서 영상 제작·촬영·편집 업무 수행 경력<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및 상근여부 포함),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p>※ 촬영장비(카메라 등) 및 소프트웨어(Premiere Pro, After Effects, Photoshop, Illustrator 등) 활용가능자 우대</p>

4. 채용 절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관련 우대사항
 -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나. 2차시험 : 면접전형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
 - * (면접 평정요소) ①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 · 채용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4.09.27.(금) ~ 24.10.06.(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게시
원서접수 기간	24.09.27.(금) ~ 24.10.06.(일)	전자메일 접수
서류전형	24.10.07.(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4.10.08.(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	24.10.14.(월)	
최종합격자 발표일	24.10.15.(화) 예정	합격자에 한해 2024. 10. 15. 개별통지 예정
채용 예정일	24.10.28.(월) 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09.27. ~ 2024.10.06. [10일간]
* 접수기간 마감일(10.6)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마감시간 업수**
- 접수방법 : 관련 서류는 아래 전자메일로 접수
 - 전자메일 주소 : monde@korea.kr

나. 제출서류 안내 ***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구분	서류	비고
★필수	1. 응시원서	(별지 1호) 자필 서명 필수
	2. 자기소개서	(별지 2호) A4 2매 이내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3호) 자필 서명 필수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4호) 자필 서명 필수
	5.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
선택 (해당자 제출)	6. 경력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또는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7.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또는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자격 불인정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5호) 자필 서명 필수 - 요청자에 한함

<제출 시 유의사항>

(공통)

- 필수제출 서류(①~④)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 응시원서 작성 사항 중 증빙서류로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전자메일 접수시)

- 필수제출 서류(①~⑤)와 선택제출 서류(⑥~⑧) 전체를 **순서에 맞게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응시자의 성함이 흥길동인 경우,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제출

- 메일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제출(흥길동)**

- 첨부파일명 : **(첨부)흥길동.pdf**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은 일절 금지합니다. 특히,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계약체결 후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 3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별지 5호를 작성하여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에 한정)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홍보담당관(☎ 044-200-4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
2. 자기소개서 양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양식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양식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응시분야	홍보전문요원		응시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학위	구분	학과	졸업(예정)일자	수학구분
		학사/석사/박사		졸업/재학/수료/중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13포인트, 줄간격 160%)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 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 사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메일 주소, 연락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 단, 채용결정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보유, 이용, 보관됨.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경우 기재) 다른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